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·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,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므로,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수사 중 사건, 재판 확정 사건 등과 달리 열람·등사 수수료를 면제함
- 나.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·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,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3. 16. ~ 3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수수료 면제의 특례)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,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의 신청에 한하여 제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사건에서 재차 열람·등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. 5. 1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(수수료 면제의 특례) 공소 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,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의 신청에 한하여 제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사건에서 재차 열람·등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.